

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7 ~ 26
----------	-----------

발의일자	2017. 4. 3.
발 의 자	김향란의원 외 6명

1. 제안이유

-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하여 각종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, 시책을 추진하면서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산장려 지원대상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함(안 제6조)

- 당초: 출산장려금 및 태아·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은 출생일 및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
- 변경: 출산장려금 및 태아·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은 출생일 및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

나. 태아·출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금 수익자를 변경함(안 제9조)

- 당초: 거창군
- 변경: 피보험자(출생아)의 부모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, 「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 조례」 제5조

나. 예산조치: 2018년도 세입 74,000천원, 세출 74,000천원 예정

다. 합 의: 기획감사실, 행정과, 보건소

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: 2017. . . ~ . . .

(나) 예고결과:

(4) 비용추계서: 붙임

(5) 성별영향분석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6개월 이전부터”를 “1개월 전부터”로 한다.

제9조제3항제1호 중 “군에 환급 조치한다.”를 “군에 환급 조치하고, 군수는 환급금 전액을 피보험자 부모에게 지급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지원대상 자격) ①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대상자는 사유 발생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에 한정한다. 다만, 제5조제3호의 경우 가임여성에게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5조제5호의 지원대상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으로서 예방접종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 <p>③ 제5조제6호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, 같은 조 제7호 지원대상자 중 태아 건강보험은 임신확인일, 출생아 건강보험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으로 한다.</p> <p>제9조(지원의 중단 및 환수) ① 읍·면장은 태아·출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자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 자격 상실 등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지급을 중단한다.</p> <p>③ 태아·출생아 건강보험료 환수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</p> <p>1. 태아·출생아 건강보험은 만기 환급형으로 협약업체에서는 만기 시점에서 만기해약금을 군에 환급 조치한다.</p> <p>2.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기간 내에 다른 시·군·구로 전출 시 보험계약이 해지되며 그동안 군에서 지급한 보험료의 해약환급금은 군수입으로 귀속된다.</p>	<p>제6조(지원대상 자격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③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 1개월 전부터 -----</p> <p>-----</p> <p>제6조(지원의 중단 및 환수)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----- ----- -----</p> <p>③----- ----- -----</p> <p>1.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 군에 환급 조치하고, 군수는 환급금 전액을 피보험자 부모에게 지급한다. -----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비용발생 요인: 셋째아이 이상 태아·출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금 수익자 변경 (거창군 귀속 ⇒ 피보험자)
 - 거창군수가 환급받아 피보험자(출생아의 부모)에게 지급
- 관련조문 : 제9조(지원의 중단 및 환수)제3항제1호

2. 비용추계의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보험 협약업체인 KDB생명(주) 산출자료에 의함

나. 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8년)	2차년도 (2019년)	3차년도 (2020년)	4차년도 (2021년)	5차년도 (2022년)	합계
총 비용		0	0	0	0	0	
세출	군비	74,000	77,000	60,000	92,000	103,000	
세입	군비	74,000	77,000	60,000	92,000	103,000	

3. 관련 의견

- 태아·출생아 건강보험은 만기 환급형으로 만기시점에서 변동금리 적용 등 만기환급금 차액 발생 가능성이 있음.

II.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

- 보험사가 만기환급금 전액을 군에 환급조치하고 거창군수는 환급금 전액을 피보험자 부모에게 지급
 - 2018년도 예산 확보액(예정) : 74,000천원(군비)

작성자 : 거창군 보건소장

관 련 법 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16.11.30.] [법률 제14197호, 2016.5.29. 타법개정]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가.~카. (생략)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 화장장(火葬場) 및 납골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오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3.~6.(생략)

□ 「지방재정법」

[시행 2017.3.30.] [법률 제14113호, 2016.3.29., 타법개정]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5.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
2. 국고 보조 자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

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공공기관"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4.5.28.>

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
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
③ 삭제 <2013.7.16.>

□ 「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 조례」

소관부서 : 여성가족정책관 [시행일 : 2015-01-01]

제5조(출산장려금) ① 도지사는 출산일 1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의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2.10.04>

② 도지사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출산장려금 지원기준·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출산장려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